교통관리 규정

[제정 2021.04.09.]

총무처 시설관리팀 043-830-8153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원대학교 학내의 교통수단·교통시설·교통행위 등의 교통관리(이하 "교통관리"라 한다)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중원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이륜차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제3조(관리원칙) ① 주차장은 일반주차장 및 장애인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학내·외의 이용자에게는 소정의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출입차량이용자에게 일반권, 정기(우대)권, 면제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차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주차면수 대비 차량이 증가, 감소할 경우 차량의 교내 출입 허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⑤ 출입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차량 통제소 및 차량출입통제기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⑥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차는 원칙적으로 교내 진입을 금한다.

제4조(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)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① 교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, 주차장내에서 세차, 수리, 급유, 음주, 도박, 상행위, 고성방가 등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② 주차는 주차선이 표시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.

③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이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교내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 내에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.

⑤ 주차장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위의 준수사항 이행을 지시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장 교통관리

제5조(주관부서) 교통관리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관장한다.

제6조(지도, 단속) 교육·연구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총무팀에서 지도,단속 할 수 있다.

제7조(주차관리) ① 모든 차량은 제3조 제1항에서 구분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제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위반 3회까지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4회이상 위반할 때에는 일정기간의 정기(우대)권, 면제권 사용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③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원상복구 및 변상)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이나 인명 등에 파손 및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.

제9조(차량통제시설의 외부위탁 관리) 차량통제시설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차량통제시설 관리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3장 주차료 관리

제10조(주차요금결정 등) 이용시간별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등은 총장이 결정한다.

제11조(회계) ① 모든 주차료는 대학회계에 세입 조치하되, 주차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교통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주차요금 재원으로 하되 학교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출입차량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<2021.04.09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